#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8

발의연월일: 2022. 1. 21.

발 의 자: 이명녀, 김지근, 문희성,

박경흠, 신성봉, 권태호,

안영호, 박채연

### 1. 제정이유

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
다.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, 제7조)

### 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, 제80조

4. 제정조례안: 따로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 : 2022. 3. 2. ~ 3. 10.(9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따로붙임

###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 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운전면허"란 「도로교통법」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 면허를 말한다.
  - 2. "고령운전자"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고령운전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교육)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  - 1.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
  - 2.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
  - 3.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- 제5조(홍보)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 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)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

### 12 (제242회-복지건설위제3차부록)

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제작형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. 제7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)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2. 주민의 복지증진
  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 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   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   -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 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   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   - 사. 묘지・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・관리
   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   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  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 □ 「도로교통법」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3. 21.,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7. 3. 21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, 2018. 3. 27., 2020. 5. 26.,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10. 19.>
  - 1. "도로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
#### 14 (제242회-복지건설위제3차부록)

- 가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
- 나. 「유료도로법」에 따른 유료도로
- 다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
- 라.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 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
- 2. "자동차전용도로"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.
- 3. "고속도로"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.
- 4. "차도"(車道)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(境界)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제80조(운전면허)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1. 12.>
  - ②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20. 12. 22.>
  - 1. 제1종 운전면허
    - 가. 대형면허
    - 나. 보통면허

- 다. 소형면허
- 라. 특수면허
  - 1) 대형견인차면허
  - 2) 소형견인차면허
  - 3) 구난차면허
- 2. 제2종 운전면허
  - 가. 보통면허
  - 나. 소형면허
  - 다.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- 3. 연습운전면허
  - 가. 제1종 보통연습면허
  - 나. 제2종 보통연습면허
- ③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1. 12.>
- ④ 시·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 대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#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
 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○ 연간비용추계

세부내역	산출근거	비고
계	42,490,000원	
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	10,000원 ×359건=3,590,000원	
고령운전자 인센티브	100,000원 ×359건=35,900,000원	시비 지급
고령자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	3,000,000원	

○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교통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주 연우

○ 연락처: (052)290-3964